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7-18호

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25호(2009.10.29.)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지정·고시되고, 2010.02.04.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2-34호(2012.06.14.)로 사업시행인가고시,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4-32호(2014.06.19.)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5-50호(2015.10.29.)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고시,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6-101호(2016.10.27.)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3일

노 원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동없음)

- 가. 종 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나. 명 칭 : 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동없음)

- 가. 위 치 : 월계동 672번지 일대
- 나. 면 적 : 23,710.00m²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 김영길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 370 희성프라자A동 305호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17. 02. 21.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변동없음)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상가면적 (㎡)
	계	39형	49형	56형	59A	59B	84A	84B	84C	84D	117형	
계	326	26	24	6	32	9	59	61	52	43	14	194.39
조합원	100				30	9	16	17	14	14	0	4
일반분양	168				2		43	42	38	29	14	-
보류시설	2							2				-
임대	56	26	24	6								

다. 신설 또는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1)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행정청에 무상귀속)

연 번	종류	명칭	위치 (도로의경우시 ● 종점)		저축 토지 등의 내역		비고
			기점	종점	필지수	면적	
계					64	4,805.00	
1	철도	일반철도 (경원선)	월계동85-5 (성북역)	도봉동368-3 (도봉산역)	17	989.00	
2	도로	소로 1류	월계동 산65-6	월계동 746-3	29	2,344.00	
3	공원1	근린공원	도봉구 창동 산24번지 일대		13	1,084.00	
4	공원2	근린공원	도봉구 창동 산25번지 일대		5	388.00	

2)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관리청	소재지	지목	필지 수	공부상 면적(㎡)	구역편입 면적(㎡)	용도폐지 면적(㎡)	무상양도 면적(㎡)	비고
계			9	1,983.00	1,983.00	1,983.00	512.00	
한국자산 관리공사	월계동 674	전	1	5.00	5.00	5.00		
	월계동 674-1	전	1	11.00	11.00	11.00		
	월계동 675	전	1	99.00	99.00	99.00		
상수도 사업본부	월계동 672-1	전	1	174.00	174.00	174.00	174.00	
	월계동 674-2	전	1	195.00	195.00	195.00	195.00	
	월계동 674-3	임야	1	64.00	64.00	64.00	64.00	
노원구청	월계동 675-1	구거	1	658.00	658.00	658.00		
	월계동 675-2	구거	1	79.00	79.00	79.00	79.00	
	월계동 676-1	도	1	668.00	668.00	668.00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해당없음)

6. 관계서류 :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주택사업과 비치서류와 같음)

[별지 제31호서식]

(제1쪽)

[illegible]

(제2쪽)

분양신청 및 관리신고	구 분	분 양 신 청		수인이 1인의 분양대 상자로 선 정	관리신고(관리종류별)					
		소 계	토지및 건축물 소유자		소 계	근저당권	압 류	기 타		
신 청 수		116	116	1건(2인)	-	-	-	-		
관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	권 리 별	대 상	분 양				청 산	수 용	협 의 수	그 밖의 분
			소 계	주 택	상 가	그 밖의 용				
	계	165	102	98	4		63			
	토지및 건축물 소유자	165	102	98	4		63			
소유권 외의 권리	대 상	72건		이전 설정		72건		해지 또는 소멸	건	
세입자 대 책	대 상	175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이전비 지급		67	주거이전비 지 급		25	비대책	83
정비 기반 시설	신 설					용 도 폐 지				
	종류 (명칭)	규모(m ²)	설치 비용		관리청	관리청	명칭	규모	국공유지(m ²)	
									유상매입	무상양여
	철도	989.00	1,398,120,000		한국철도 시설공단	재정부			145.00	
	도로	2,344.00	3,184,420,000		노원구	상수도본부				433.00
	공원	1,472.00	2,305,569,940		노원구	노원구			1,326.00	79.00
	완충녹지					계			1,471.00	512.00
평가액 또는 추산액	시 행 전					시 행 후				
	계	토 지		건 축 물		계	토 지		건 축 물	
	32,102,310,956	31,152,660,955		949,650,001		98,629,000,000	33,593,037,400		65,035,962,600	
자 금 운 용	총 소요사업비		93,074,119,000			수입 추산액		116,036,153,000		
이 인가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2017. 02. 21. 노 원 구 청 장 인										
									수수료	
									없 음	

※ 인가안내

1.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그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명기하여 인가 받아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
2.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관리처분계획 인가내용에 의한 대지 및 건축시설별 후속 처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관계 법령과 해당 시설의 처분에 관계되는 다른 법령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4. 분양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자는 공사완료고시전에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구청장이 투기방지를 위하여 권리변동신고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6. 공사완료고시 후 행하는 이전고시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대로 하여야 합니다.